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봉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098

발의연월일: 2021. 5. 13.

발 의 자:전봉민·정동만·서병수

박성민 · 강기윤 · 안병길

구자근・서범수・황보승희

양금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고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국민연금 정보,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농지연금(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자금), 공무원연금이나 군인 연금 등의 직역연금 정보는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가 되지 않아 직접 해당기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상황임. 따라서 충실히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연금정보 등의 노후 예상소득을 한번 에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 부장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, 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자금, 공무원

연금, 군인연금 등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16조).

법률 제 호

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후준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 제목 중 "연금보험"을 "연금보험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금융회사등의"를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등의"로, "「보험업법」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, 「소득세법」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저축계좌, 퇴직연금계좌 가입 현황 등"을 "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 등에 관한 자료또는 정보로서"로, "연금보험 정보"를 "연금보험등 정보"로 하며, 같은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, 같은 조 제4항본문・단서,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"연금보험"을 각각 "연금보험등"으로 한다.

- 1. 「보험업법」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
- 2. 「소득세법」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저축계좌, 퇴직연금계좌
- 3.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
- 4.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담 보 노후생활안정자금
- 5.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8조, 「군인연금법」 제7조, 「사립학교교직

원 연금법」 제33조 및 「별정우체국법」 제24조에 따른 각 급여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안 제16조(연금보험 정보의 제공 등) 제16조(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등) ① -----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노후준비서비 스 신청자가 제출한 동의서면 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----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「보험업법」 제4조제1항제1호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나목에 따른 연금보험, 「소득 및 금융회사등의-----세법」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|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 등 저축계좌, 퇴직연금계좌 가입 <u>에 관한 자</u>료 또는 정보로서---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(이하 "연금보 -----연금보 험 정보"라 한다)의 제공을 요 <u>험등 정보-----</u> 청할 수 있다. 1. 「보험업법」 제4조제1항제1 <신 설> 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 2. 「소득세법」 제20조의3에 <신 설> 따른 연금저축계좌, 퇴직연금 계좌 <신 설> 3.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 제2 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

<신 설>

<신 설>

- ② (생략)
- ③ 제1항에 따라 <u>연금보험</u>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 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연 금보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의 장은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 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.다만, 명의인이 요구할 때에는 연금보험 정보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4.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
리기금법」 제24조의5에 따른
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자금
5.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8조,
「군인연금법」 제7조, 「사
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제33
조 및 「별정우체국법」 제24
조에 따른 각 급여
② (현행과 같음)
③연금보험등
<u>ਦ</u>
<u> 금보험등</u>
④연금보험등
연금보험등-
연금보험등

-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 금보험 정보의 제공요청 및 제 공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. 다 만,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 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.
- ⑥ 그 밖에 <u>연금보험</u> 정보의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<u>◊</u>	년 <u></u>
<u>금보험등</u>	_
	-
	_
	-
	_
	-
	-
⑥ <u>연금보험등</u>	-
	_
	_